

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898호

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
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
인

2016년 3월 9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지난년도 체납액(이하 ”체납액“이라 한다)”를 “지난
년도 체납액(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, 이하
”체납액“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부과하게 한“을 “부과한“으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부과하게 한“을 “부과한”으로, “부과액”을 “징수액”으로 한다.

제3조제4호를 제5호로, 제5호를 제4호로 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제3호”를 “제4호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 중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 · 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생 략)</p> <p>제2조(지급대상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1. <u>지난년도 체납액(이하 “체납액”이라 한다)</u>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③ ~ ⑦ (생 략)</p> <p>제3조(지급기준)</p> <p>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<u>부과하게 한</u>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<u>부과하게 한</u> 경우에는 그 <u>부과액</u>의 100분의 5</p>	<p>제1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지급대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지난년도 체납액(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, 이하 “체납액”이라 한다)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지급기준)</p> <p>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1. ----- -----<u>부과</u> <u>한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<u>부</u> <u>과한</u>-----<u>징수액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4.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 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</p>	<p>4.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</p>
<p>5.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</p>	<p>5.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 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</p>
<p>제4조(지급한도)</p> <p>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지급한도)</p> <p>①-----제4호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~제9조 (생략)</p>	<p>제5조~제9조 (현행과 같음)</p>